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기술사법령 안내

엔지니어링진흥법 ('92. 11. 25 법률 제 4501호)	기술사법 ('92. 11. 25 법률 제 4500호)
동시행령 ('93. 5. 26 대통령령 제 13889)	동시행령 ('93. 5. 26 대통령령 제 13890호)
동시행규칙 ('93. 5. 26 총리령 제 420호)	동시행규칙 ('93. 5. 26 총리령 제 419호)

글/김 기 목 (대한전기기사협회 기술실장)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기술사법”으로 분리하여 개정·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과 관계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동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1. 목적 및 정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보수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활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규칙 제3조)

(1) 자본금

(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전담인 경우 1억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 을 포함)이상

(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10억 (엔지니어링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 을 포함)이상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10인이상

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절차

(1) 신고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한다.

(2)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 1부
- 신고기준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 1부
- 직원현황

(3) 상호·대표자성명·소재지 및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명칭·주요활동·기술부분·전문분야 및 기술인력

다. 정부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 (1) 해당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
림조합중앙회
- (2) 추진방법 : 당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기타 사업수행 능력
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 능력
을 평가하여야 한다.
- (3)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인 사업
 - (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3억원이상
인 사업
 - (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
치고자 하는 사업
 - (다)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 (4)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기준(별표)과, 핵심 엔
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 등 정부에서는
다수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공동으로 필
요로 하는 기술, 엔지니어링주체가 각각 단
독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3의 규정에 의한 특
정연구개발사업
 - (2)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 (3)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4) 기타 정부체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주무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 사업

3. 엔지니어링사업 관련신고

가. 기술도입계획의 신고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예정기술 도입대가가 미합중
국통화 30만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로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다.

나.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 수출계획의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
지니어링기술은 미합중국통화 30만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 수출계획 개요서 3부, 엔지니
어링기술 수출계약서안 3부를 신고서에 첨부하
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경제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
하여 인가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4.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공제조합

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
술의 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의 사업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엔지니어링기술의 진
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기술인력의 기
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기술정보
의 수립·분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
기준의 제정,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외국진
출에 대한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탁하는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3) 회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그 신
고가 된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

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2) 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업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어음의 할인, 기자재 구매알선,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합원의 도난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탁하는 사업

지원의 요청

- 과학기술처장관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한 자료의 접수
- (2) 위탁할 때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개정(제23조제2항제1호)

- (1)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자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자로 개정

5. 기 타

가. 자료제출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업무 및 경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책임범위안에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서명날인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0만원이하

다. 비밀누설 금지

수주한 엔지니어링주체 및 그 임·직원 및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권한의 위탁

- (1)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획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신고사항의 통보
 - 엔지니어링기술 수출계획의 신고의 수리 및

[별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의 평가기준(제7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자격	①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격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하지 않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보유함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② 예산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적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증인의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제한기간중임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제한기간중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조건미비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조건충족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만점	평가결과	
2 기 술 능 력	가. 신청인 의 유사사 업 수행 경 험	최근 3년간 당 해 엔지니어링 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④도급수행건수 ×2.0 ⑤하도급수행건수 ×1.0	20.0 10.0	
	나.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 전 부의 책임을 맡게 된	최근 3년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	⑥수행건수×2.0 ※전부의 책임을 맡게 될 기술자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인 경우에는 우대점수를 부여함	10.0	

신법소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만점	평가결과
기술자의 경험		수 있음		
다.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력 보유 현황	⑦ 기술자등급별 인원수에 동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큰 수	<input type="checkbox"/> 상위 10% 이내 : 30.0 <input type="checkbox"/> 상위 10% 초과 20% 이내 : 25.0 <input type="checkbox"/> 상위 20% 초과 30% 이내 : 20.0 <input type="checkbox"/> 상위 30% 초과 40% 이내 : 15.0 <input type="checkbox"/> 상위 40% 초과 50% 이내 : 10.0 <input type="checkbox"/> 상위 50% 초과 : 5.0	30.0	
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전연구	⑧ 사전연구의 진행정도	<input type="checkbox"/> 사전연구가 완료되어 있음 : 10.0 <input type="checkbox"/>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 : 5.0 <input type="checkbox"/> 초기진행단계이거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 : 0.0	10.0	
		소 계	80.0	
3. 경영능력	⑨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input type="checkbox"/> 500이상 : 10.0 <input type="checkbox"/> 350이상 500미만 : 8.0 <input type="checkbox"/> 250이상 350미만 : 6.0 <input type="checkbox"/> 100이상 250미만 : 4.0 <input type="checkbox"/> 100미만 : 2.0	10.0	
	⑩ 부채비율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자기자본 × 100	<input type="checkbox"/> 70미만 : 10.0 <input type="checkbox"/> 470이상 130미만 : 8.0 <input type="checkbox"/> 130이상 180미만 : 6.0 <input type="checkbox"/> 180이상 240미만 : 4.0 <input type="checkbox"/> 240이상 : 2.0		
		소 계	20.0	
4. 업무량	⑪ 수행중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의 월평균액 ÷ 총종업	<input type="checkbox"/> 총평가대상자중 수치가 가장 높은 순으로 10% 이내에 속하는 자 : -10.0 <input type="checkbox"/> 총평가대상자중	0.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만점	평가결과
	원수(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종업원으로 계산함)	수치가 가장 높은 순으로 10%를 초과하고 60% 미만에 속하는 자 : -5.0 <input type="checkbox"/> 기타 : -0.0		
5. 신용도	⑫ 최근 5년간 예사회계법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input type="checkbox"/> 최근 5년간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된 원수 × -5.0	0.0	
총 계			100	

- [비고] 1. 사업능력평가기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성질·목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포함)·평가기준 및 만점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을 합한 수위로 평가한다.
 3. 세부평가항목 ⑦의 기술자등급별 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술자등급별 계수

구분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계수
특급기술자	기술자		4.0
	자 격 실 무 경 력	학 위 등 실 무 경 력	3.0
	기사 1급 12년 이상	박 사 3년 이상 석 사 7년 이상 학 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14년 이상	
고급기술자	자 격 실 무 경 력	학 위 등 실 무 경 력	2.0
	기사 1급 10년 이상 12년 미만	박 사 3년 미만 석 사 4년 이상 7년 미만 학 사 10년 이상 12년 미만	
	기사 2급 15년 이상	학 사 10년 이상 12년 미만	
		전문대학 졸업 12년 이상 14년 미만 고등학교 졸업 14년 이상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체수	
중급기술자	자 격	실 무 경 력	1.5	
	기사 1급	5년 이상 10년 미만		학 위 등
	기사 2급	7년 이상 15년 미만		실 무 경 력
				학 사
초급기술자	자 격	실 무 경 력	1.0	
	기사 1급	5년 미만		학 위 등
	기사 2급	7년 미만		실 무 경 력
				학 사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진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며,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별표1].
“성실의무” 기술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술사 활용시책

가. 정부의 기술사 활용시책 내용

- (1)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 (2)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 (3)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 (4)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나. 기술사 활용시책의 수립방법

- (1)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해당 기술사의 해당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2)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 활용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립된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행계획의 시행

- (1) 주무부장관은 기술사 활용시책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주무부장관은 시행의 결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술사사무소

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 (1) 개설은 기술사사무소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 개설한다.
- (2) 등록된 기술사는 해당 기술사의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기술사는 그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기술사법령

※ 기술사법은 1975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므로 폐지되었다가 기술사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제정된 것으로 본다.

1. 목적 및 정의

가. 목적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수 없다.

나. 등록기준·등록절차

-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한다.
- (2)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기술사사무소개설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 (3) 등록거부사유는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때 등이다.

다. 기술사사무소 등의 의무

- (1)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명칭을 기술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자격증 등의 게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기술사와 기술사이었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 등은 다른 범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서명날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계획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등록된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무소 등록기술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바. 등록취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기술사의 관리

- (1)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 (2) 기술사의 분쟁조정, 기술사활용시책의 종합조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상공자원부 등 9개 부처의 2급, 3급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한국기술사회

가. 설립목적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나. 기술사회의 회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의 회원이 된다.

다. 업무

-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 (2)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능력향상
- (4) 기술사의 품위보전
- (5) 기술사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7) 상기업무와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

다. 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사무소등록 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사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 (2) 등록사항 변경·휴업 또는 폐업신고수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일] 엔지니어링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기술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모두 1993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 1)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

종 류	기 술 범 위
기 계 부 문	1.기계제작 2.유체기계 3.산업기계 4.공조냉동기계 5.건설기계 6.차량 7.기계공정설계 8.용접 9.금형 10.정밀측정
선 박 부 문	1.조선설계 2.선체 3.선박기계
항 공 · 우 주 부 문	1.항공기체 2.항공기관
금 속 부 문	1.철야금 2.비철야금 3.금속재료 4.표면처리 5.금속가공
전 기 · 전 자 부 문	1.발송배전 2.전기기기 3.전기응용 4.절도신호 5.공업계측제어 6.전자응용 7.전자계산기
통 신 · 정 보 처 리 부 문	1.전기통신 2.정보통신 3.정보관리 4.전작계산 조직응용
화 학 부 문	1.공업화학 2.고분자 제품 3.화학장시설비 4.화학공정설계 5.요업
섬 유 부 문	1.방사 2.방직 3.제포 4.염색가공 5.생사 6.의류
광업자원부문	1.지하자원개발 2.탐사 3.지하자원처리
건 설 부 문	1.도설 및 기초 2.토목구조 3.토목시공 4.농어업토목 5.토목품질시험 6.항만 및 해안 7.도로 및 공항 8.철도 9.교통 10.수자원개발 11.상하수도 12.건축구조 13.건축시공 14.건축품질시험 15.도시계획 16.조경 17.측지 18.지적

종 류	기 술 범 위
건 설 부 문	19.건설안전 20.화약류관리 21.건축기계설비 22.건축전기설비
환 경 부 문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농 립 부 문	1.식품 2.농화학 3.축산 4.종묘 5.영양 6.임산가공
해 양 · 수 산 부 문	1.해양 2.수산양식 3.어로 4.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공장관리 2.품질관리 3.포장 4.산업위생관리 5.기계안전 6.전기안전 7.화공안전 8.소방설비 9.가스
응용이학부문	1.지구물리 2.응용지질 3.제품디자인 4.원자력발전 5.핵연료 6.방사선관리 7.비파괴검사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구 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22조제1항 제1호	5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22조제1항 제1호	1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법 제22조제1항 제1호	15만원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10만원
3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기술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2호	10만원
4	과학기술처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10만원
5	과학기술처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 제 1 항 제3호	10만원
6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4호	10만원